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1. 9. 17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8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8월 28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01년 9월 11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김성학)

- 가. 폐지이유  
1994년 9월 23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·조정할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며, 근거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  
조례폐지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민창규)

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근거법령이 삭제되었고, 또한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며, 아울러 분쟁의 주 대상인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해 사전에 조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4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1. 8. 9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가. 폐지이유

1994년 9월 23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·조정할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며, 근거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골자 : 조례폐지

### 3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 
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, 제37조의 4, 제37조의 5 삭제(2000. 1. 28)  
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42조 삭제(2000. 6. 7)  
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33조 삭제(2000. 7. 29)
-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.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1. 9. 17.  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년 4월 18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9회(임시회) 제1차위원회(2001년 4월 25일) 상정 의결 보류  
제84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(2001년 9월 12일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강민수)

가. 제정이유

- (1) 기존의 기술직 공무원이 종합행정(민원조사, 수방, 재설 등)을 수행하면서 소규모공사감독을 병행하여 공사현장에 상주 불가로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었으나 감독업무와 일반 행정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.